## 비조치의견서 (□비조치 ☑조치 □기타)

	담당 부서	IT·금융정보보호단	담당자 (직위, 성명)	구원호 팀장	연락처	02-3145-7415
요청대상 행위	□ 정보처리시스템 운영·개발·보안 목적의 단말기를 별도의 업무用 SBC (Server Based Computing)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					
판단	□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, 개발,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(이하 '전산센터 단말기')를 SBC로 구성하는 것은 전산센터 단말기가 외부통신망으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관련 규정에 위배됩니다.					
판단이유	□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해킹 방지를 위해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 으로 분리하여야 합니다(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).					
	□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§2의2②iv에 따라 전산센터 단말기와 외부통신망과 연결구간, 업무용 시스템과의 연결 구간을 각각 차단한 경우는 물리적 망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,					
	통	의하신 구성은 전산선 해 접속하는 방식으로 리적 망분리 예외규 <sup>2</sup>	,, 두 단말기	의 연결구간이		

- ※ **비조치의견서의 효력**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 제6조의2, 제11조제1항· 제2항 참조)
  - 1.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.
  - 2.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 - 가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  - 나.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  - 다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
  - 라.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

- 마.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,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3.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 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 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